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0월 12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0월 23일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7년 11월 28일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종 율

나.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하고, 위원회 기능·회의소집·의사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협력위원회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협력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1조)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근 도

- 본 『구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 행정기관과 민간단체, 관계분야 전문가 등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